2011도5329 증거인멸 등 (민간인사찰관련증거인멸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이른바 '민간인 사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인멸죄와 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 되어 증거인멸죄는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증거인멸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행정주사)에 대하여는 증거인멸죄와 공용물건손상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으며, 피고인 C(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방실수색죄, 공용서류은닉죄를 유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였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1. 사안의 내용

- 피고인 A, B는 ① 2010. 7. 5.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사무실의 컴퓨터들에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구동하여 D 및 00(주)에 대한 내사와 관련된 각종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② 2010. 7. 7. 위 컴퓨터들의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저장자료를 완전히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동시에 하드디스크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임.
- 원심은 증거인멸죄, 공용물건손상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함.

■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함.

Ⅱ. 판결 결과 및 판시 사항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파기
 -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임.
 - 피고인 A가 삭제하여 인멸한 컴퓨터 파일 자료들은 D에 대한 내사와 관련된 증거들인데, 피고인 A는 D에 대한 내사와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
 -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A의 증거 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A의 증거인멸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 함(다만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함).
- 피고인 B의 상고는 기각함.
 - 원심이 피고인 B의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피고인 C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
 - 원심이 피고인 C의 업무방해, 방실수색, 공용서류은닉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